

서울특별시의회  
제335회 임시회

의안번호  
3633

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2026. 4. 21.

보건복지위원회  
수석전문위원

## [신동원 의원 발의]

의안번호 3633

### I. 조례안 개요

#### 1. 제안경위

가. 제안자 : 신동원 의원(찬성 21인)

나. 발의일자 : 2026년 4월 6일

다. 회부일자 : 2026년 4월 7일

#### 2. 제안이유

- 2025년 5월 19일 공포·시행된 「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(서울특별시조례 제9628호) 제3조1항제4호에 따라, 서울시는 지정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금 지원 범위를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뿐만 아니라 유족의 배우자까지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음.
- 그러나 같은 조례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자를 여전히 「독립유공자법」상의 등록된 자로만 한정하고 있음. 이에 같은 조례 내에서 지원대상자와 지원사업의 대상자의 범위가 다르게 규정되어 이를 정비하고자 함.
- 또한, 같은 조례 제3조1항제6호의 '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' 규정은 조문의 명확성과 구체성이 부족하여 이를 삭제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가. 지원사업의 명확성과 구체성이 부족한 조문 삭제 (안 제3조1항제6호 삭제).

나. 조례의 지원대상자를 지원사업 대상자와 일치(안 제4조 삭제).

### 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

## II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윤혜숙)

### 1 개정안의 개요

- 본 조례개정안은 현행 조례 제3조(지원사업)의 대상과, 제4조(지원 대상자)의 불일치를 해소하여 조례의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발의되었음.

#### <신·구조문 대비표>

| 현 행  | 개 정 안  |
|--|--|
| <p>제3조(지원사업) ①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예산의 범위에서 독립유공자 및 그 <u>유족</u>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.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>6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<u>사업</u></p> <p>② (생략)</p> | <p>제3조(지원사업) ① -----<br/>-----<br/>----- <u>유족 등</u> -----<br/>-----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&lt;삭 제&gt;</p> |
| <p>제4조(지원대상자) <u>지원대상자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으로서 서울특별시 관할 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법 적용대상으로 등록된 자로 한다.</u></p>   | <p>&lt;삭 제&gt;</p>   |

## 2 검토의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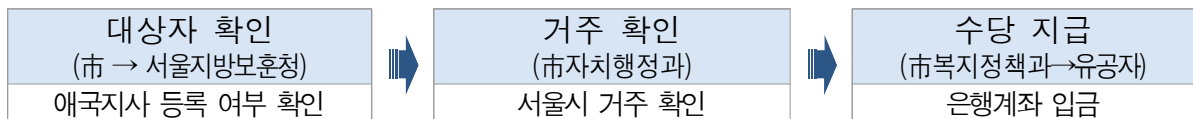
### 가. 서울시 독립유공자 지원사업 현황

- 서울시에서는 「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, 「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에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근거해 서울시 거주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(선순위 유족 1인)을 대상으로 수당 지급 등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.
- 이 가운데 서울시 독립유공자는 본인 1명, 선순위 유족 2,241명('26년 1월기준) 으로 서울시에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조의금, 생활보조수당, 독립유공 생활지원수당 지급 등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.

#### ※ 서울시 독립유공자 대상 지원사업 현황

##### ○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조의금

- 근거 : 「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3조
- 지급대상 : 서울시 거주 생존 애국지사 1명('25. 12월 기준)
- 지급기준 : 보훈명예수당(개인별 1,000천원/월), 사망조의금(1,000천원)
- 지원방법 : 지급대상 여부 확인 후 유공자가 희망하는 은행계좌에 입금



- 소요예산 : 12백만원

##### ○ 생활보조수당

- 근거 : 「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7조
- 지급대상 : 저소득 국가유공자 및 유족 4,200명 (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상  
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유족 1인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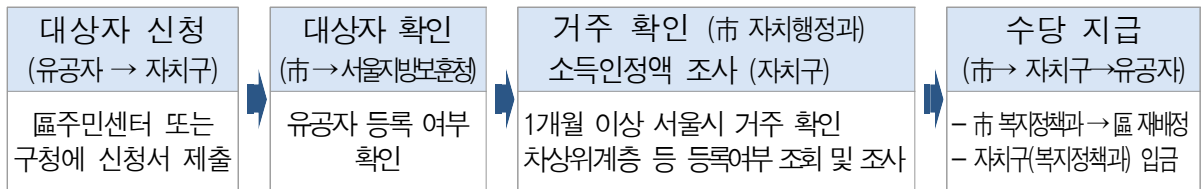
※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(연령기준 폐지, '25. 1월~)

❖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저소득층 소득인정액

- 기초 생계급여 수급권자(기준 중위소득 32% 이하), 차상위계층(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)
- 2026년 기준 중위소득

| 가구원 수   | 1인 가구     | 2인 가구     | 3인 가구     | 4인 가구     | 5인 가구     | 6인 가구     |
|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
| 소득(원/월) | 2,564,238 | 4,199,292 | 5,359,036 | 6,494,738 | 7,556,719 | 8,555,952 |

- 지급기준 : **매월 200천원 지급**
- 지원방법 : 지급대상 여부 확인 후 유공자가 희망하는 은행계좌에 입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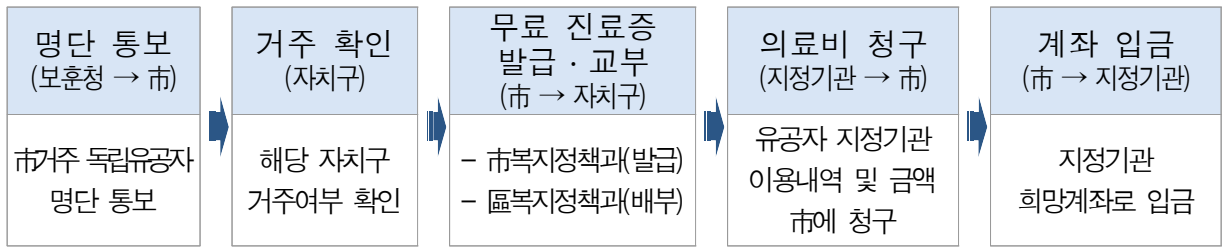


## 나.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추진 경위 및 현황

- 독립유공자는 「독립유공자법」에 의해 국비진료,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 등 기본적인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, 서울시에서는 이와 별도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등을 대상으로 지정의료기관에서 진료한 의료비 또는 약제처방비를 지원해오고 있었음.
- ‘25년 기준 서울시의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은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및 그들과 세대를 같이 하고 있는 배우자가 대상이었고,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이 사망으로 인해 자격을 상실할 시, 배우자는 당해연도까지만 의료비가 지원됨. 이는 독립유공자 및 그 선순위 유족의 연령대 등을 고려하였을 때 고령인 이들의 배우자에게 수혜가 제한된다는 한계가 존재했음.
- 2025년 제 330회 임시회에서 이와같은 해당사업의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의원발의로 수권자(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)이 사망한 후에도 배우자에 대한 의료지원 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의 조례가 통과됨.
- 이에 따라 2025년 10월부터 독립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유족 사망시에도 배우자에 대한 의료비 계속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으며, 금년도 소요예산은 1,316백만원으로 수립됨.

※ 독립유공자 의료비지원 사업

- 근거 : 「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3조
- 지원대상 : 독립유공자·선순위 유족과 배우자
  - ※ 독립유공자 유족 사망시 배우자에 대한 의료비 계속 지원 ('25. 10월~)
- 지원내용 : 지정 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금 전액지원(진료비, 약제비)
- 지원방법 : 지정기관에서 매월 市에 청구, 市는 의료기관 은행계좌로 입금



※ 지정기관 : 33개소(시립병원 8개소, 약국 25개소)

- 소요예산 : 1,316백만원

다. 조례개정의 필요성 및 검토의견

① 지원대상의 삭제 (현행 제4조)

- 현행 조례 제3조제1항제4호에서 독립유공자 및 유족, 그리고 유족의 배우자가 서울시 지정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현행 조례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자를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만으로 한정하고 있어 조례 내 지원대상 범위에 차이가 존재함.
- 이에 따라 본 개정안은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의 대상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현행 조례 제4조를 삭제하고자 하며, 이는 조례 내 관련 규정 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됨.

- 현행 조례 제4조는 조례 전반에 적용되는 지원대상자의 기본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나, 이미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(이하 독립유공자법)」 제5조에서는 유족의 범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,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독립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법의 적용대상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, 등록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.
- 이에 따라, 유족은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선순위 유족 1인만을 의미하며, 이는 조례상의 대상자도 같은 대상으로 적용된다 할 수 있으므로, 제4조 삭제는 가능할 것임. 또한, 현행 조례 제3조에서 개별 사업에 대한 각각의 대상자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어, 이를 근거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임.

제3조(지원사업) ① 서울특별시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예산의 범위에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.

1. 생존애국지사에게 월 100만원의 보훈명예수당 지급
  2. 애국지사 사망 시 조의금 100만원 지급
  3. 3.1절, 광복절 기념일에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게 위문금 각 10만원 지급(직계후손이 선순위자일 경우 그 사촌이내 형제·자매를 포함한다)
  4.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, 그리고 유족의 배우자가 서울시 지정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금 지원
  5.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월20만원의 생활지원수당 지급
    - 가. 독립유공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로서 법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
    - 나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기준 중위소득 70% 이하인 사람 및 「기초연금법」에 따른 기초연금수급자
  6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② 그 밖에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### ③ 지원사업 내용의 삭제 (현행 제3조제1항제6호)

- 본 개정안에서는 제3조제1항제6호의 “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”을 삭제하고자 함. 현행 조항은 그 내용이 포괄적 재량 규정을 삭제하여 지원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재정지출의 통제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.
- 해당 조항은 사업의 범위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, 시장의 판단에 따라 사업을 추가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규정으로서, 조례의 명확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음.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기준에서도 입법사항을 집행기관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방식은 지양되어야 하며, 조례는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.
- 따라서, 해당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법제처 입안기준상 명확성의 원칙을 확보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, 향후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신규사업의 도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 개정을 통해 그 근거를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입법적 통제와 제도적 정합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임.

#### ※ 부서 의견 : 원안가결

- 현행조례 제3조1항제4호의 유족범위에 대한 확대해석이 발생할 수 있으나, 이는 지침으로 별도 기준 마련을 통해 보완가능하며, 조례의 취지에 공감해 원안가결의 의견임.

### 3 종합의견

- 본 개정안은 조례 내 지원대상 정의의 불일치를 해소하고, 포괄적 재량 규정을 정비하여 보훈행정의 명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함.
- 특히 현행 제4조(지원대상자) 삭제를 통해 조례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, 현행 제3조(지원사업)에서 각 지원사업별로 대상자가 이미 명시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, 일반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가능할 것임.
- 또한, 시장의 포괄적 재량권인 현행 조례 제3조제1항제6호를 삭제하는 것은 법제처의 입안기준 상 명확성의 원칙에 부합하며,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가능할 것임.
- 다만, 신규사업 추진시 행정의 유연성이 일부 제한될 우려가 있으나, 이는 향후 필요 사업추진시 조례개정을 통해 보완이 가능할 것임.

|           |             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전문위원 김소은  | 02-2180-8144 |
| 입법조사관 도미화 | 02-2180-8147 |